

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

법무부는 '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' 사업을 운영할 조기적응 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, 관련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 11월 10일

법무부장관

1.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개요

○ 사업 목적

- 재한외국인에 대한 입국 초기 사회적응 지원

○ 사업 내용

- (대상) 외국인유학생, 밀집지역외국인, 결혼이민자, 중도입국청소년, 호텔·유홍자격 외국인연예인, 계절근로,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 동포 등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
- (내용)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초기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초법, 생활정보, 공중도덕, 한국문화 등을 교육 (3시간 과정)
 - ※ 체류유형별로 공통과목(2시간)과 특수과목(1시간)으로 구성 **(붙임1 참조)**
- (강사) 법무부 양성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강사
- (운영기관) 조기적응지원단, 조기적응지원센터
- (교재) 언어별·체류유형별 교재 별도 제작 배포

○ 시행 근거

- 출입국관리법 제39조, 동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0조,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5
-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21조

○ 운영 기관 업무 내용

- 참여자 모집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개설
-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제공
- 참여자 및 강사에 대한 출결관리, 교육이수증 발급, 만족도 조사
- 시행결과 보고(관할 지방출입국.외국인 관서 및 조기적응지원단)

○ 지정 기간 : 2년 (2023. 1. 1. ~ 2024. 12. 31.)

- 단, 정부정책 또는 예산사정에 따라 지정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

○ 지원 내용

- 교육 실적에 따라 소정의 운영비 및 교재 지원
※ 강사비, 멘토링비는 조기적응지원단에서 강사 및 멘토에게 직접 지급

2. 운영기관 모집규모 (붙임2 참조)

○ 조기적응지원센터 ⇒ 14개

- (결혼이민자) 결혼이민자 지원단체(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함)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⇒ 3개
- (중도입국청소년) 교육부 지정 다문화예비학교, 대안학교, 중도입국청소년 지원단체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⇒ 3개
- (방문취업 외국국적동포) 동포 지원 관련 지자체, 비영리법인, 외국인지원단체, 동포체류지원센터 등 ⇒ 8개

3. 신청 자격

○ 공통 요건(조기적응지원센터)

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 또는 단체

-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
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

-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제1호~제6호 규정에 따른 대학 및 그 소속기관

- 「민법」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

※ 비영리법인에는 「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」 제2조·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포함된 것으로 봄

-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무 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
-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② 상시 활용이 가능한 사무실 및 교육장소 확보

- 교육장소는 최소면적 15㎡ 이상이면서 1회 교육 시 10명 이상 교육 가능해야 함

③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

④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

※ 배상범위 : 1인당 1억원 이상, 사고 당 3억원 이상

⑤ 신청기관 설립일로부터 공모일까지 1년 이상 운영한 기관

※ 단순한 명칭변경 등의 경우는 실제 운영일을 기준으로 판단

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운영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
○ 개별 요건

(공통사항)

- 이민자 대상 교육운영 경력이 있고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적·물적 자원을 구비한 기관 또는 단체

(결혼이민자)

- 결혼이민자 대상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
- 1회 교육 시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 확보

(중도입국청소년)

-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
- 진로교육 등 특수과목 강의를 가능한 강사를 확보한 기관 또는 단체

(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)

- 1회 교육 시 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시설 확보
- 평일(09~18시) 전화문의 응대 및 온라인(소시넷) 교육신청 대행이 가능한 기관

○ 신청 제한

-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됨
 - ① 최근 3년 이내에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제50조 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
 - ② 「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
 - ③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경우

4. 신청 절차

○ 신청 기간

- 2022. 11. 15.(화) ~ 11. 29.(화) 17:00까지

○ 제출 서류

① 신청기관장 명의 공문 **[붙임6 참조]**

※ 신청기관장은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의 대표자이어야 함

② 조기적응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**[붙임3 참조]**

③ 신청기관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계획서 **[붙임4 참조]**

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*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
* 법인의 경우에만 제출

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공익법인 설립허가증,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

※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

⑥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류(보험증권 등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) 및 화재 등 사고 대비 안전대책

[보험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]

◦ (소재지) 보장대상 소재지 주소가 교육장소와 일치하여야 함

◦ (보장기간) 사업개시일 이후까지 유효하여야 함

※ 단, 공모일 기준 유효하나 '22년 말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충족한 것으로 보며, 추후 기간 갱신된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

◦ (보장금액) 기관 설립규정에 따른 별도 보험 가입이 없는 경우 담보사항으로 1인당 1억원 이상, 사고당 3억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

◦ (별도가입여부) 시설물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보험안에 담보사항으로 확인되면 무방함

○ 신청 방법

- 방문·우편·전자메일, 전자공문(관공서 및 대학 등 전자공문 시스템이 가능한 경우) 중 선택

※ 우편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장소(접수처)에 도착하여야 함

○ 신청 장소(접수처)

- 소재지 관할 지방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) 내 이민통합지원센터

※ 연락처 등은 **[붙임7 참조]**, 관할구역은 홈페이지(www.immigration.go.kr) 참고

○ 신청 유의사항

- 모든 서류는 A4 용지크기로 한글 또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

※ 단, 운영계획서를 PDF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인 날인이 필요한 첫장을 제외하고는 편집이 가능한 한글 파일을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, 방문 신청하는 경우라도 운영계획서 한글 파일은 전자메일로 별도 제출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
5. 지정 기준 및 절차

○ 지정 기준

- 심사평가 기준표 **[붙임5 참조]**에 따름

○ 지정 절차

- (서류심사) 지정신청서 등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
- (실태조사) 지정기준 적격성 여부 등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
 - ※ 기존 조기적응지원센터는 현장방문 실사 생략 가능
- (선정심사) 출입국·외국인관서는 '조기적응지원센터 선정위원회'*를 개최하여 심사

* 지방사회통합자문위원회(민간인 2명 포함하여 최소 5명 이내)로 구성

- (최종지정) 법무부장관이 최종 지정

○ 지정결과 발표

- '22. 12. 16.(금) 법무부 및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 공표
※ 지정 결과만 발표하며, 신청기관별 심사 점수 등 심사 서류는 비공개

6. 참고사항

-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지정을 동시에 신청* 가능

* 단, 이 경우 기관(단체)명은 동일한 공식 명칭을 사용할 것(약칭 사용 및 기관명 띄어쓰기 등 주의)

○ 참고 및 문의

- 사회통합정보망(<http://www.socinet.go.kr>) 참고
- 기타 문의 : 지방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) 이민통합지원센터[붙임 7]

- 붙임
1. 조기적응프로그램 개요
 2. 조기적응지원센터 모집 규모(안)
 3.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신청서
 4.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계획서
 5.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 평가항목 및 심사내용
 6.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신청공문 작성 요령
 7. 지방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) 주소 및 연락처. 끝.

① 목적

-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초기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초법·제도, 의료·주거·교통·통신·생활정보 및 체류국적 관련 법령 등을 교육
 - ※ 중국어, 영어, 베트남어(한국어 포함) 등 18개 언어로 진행

② 참여 대상

- (의무참여) 방문취업(H-2)자격 외국국적동포, 호텔·유흥(E-6-2)자격 외국인연예인
 - ※ 외국인등록 신청 前 반드시 참여
- (자율참여) 외국인유학생, 결혼이민자*, 중도입국청소년, 밀집지역외국인
 - *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체류기간 2년 부여(미이수하는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년 부여)

③ 교육 과정

- 필수 생활정보, 기초법·제도 내용의 '공통과목'(2시간) 및 체류 유형별로 특화된 내용의 '특수과목'(1시간)으로 총 3시간 구성
 - ※ 공통과목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강사가 담당하며, 특수과목은 해당 분야 전문가(예: 교수·교사·유학생 담당자, 인권강사 등)가 담당

4 체류유형별 교육과정

이민자 유형	과목		내 용
외국인 유학생	공통 과목 (2시간)	기초법 · 질서	- 자유민주적 기본질서, 준법의식,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- 생활법률, 경범죄 유형, 쓰레기 분리수거, 성범죄·마약사범·무면허 운전 등 법규위반 사례 - 출입국·체류·국적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기초정보
		한국사회 적응정보	-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,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- 교통, 의료, 주거, 전기·통신, 은행 등 이용방법 - 정부기관, 지자체, 복지·교육·문화시설 등 소개 - 유학생 진로분야와 직업소개 - 점수제 등 신분변동에 따라 필요한 체류절차 안내
	특수 과목 (1시간)	유학생 필수정보	- 유학생으로 학업을 마치고 취업 또는 창업하여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유학생 선배 경험담, 성공적 유학생활을 위한 조언 등 - 학사관리, 교우관계, 기숙사생활, 동아리활동 등 필수 학교생활 정보
호텔·유흥자격 외국인 연예인	공통 과목 (2시간)	기초법 · 질서	- 자유민주적 기본질서, 준법의식,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- 생활법률, 경범죄 유형, 쓰레기 분리수거, 성범죄·마약사범·무면허 운전 등 법규위반 사례 - 출입국·체류·국적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기초정보
		한국사회 적응정보	-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,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- 교통, 의료, 주거, 전기·통신, 은행 등 이용방법 - 정부기관, 지자체, 복지·교육·문화시설 등 소개
	특수 과목 (1시간)	인권보호	- 근로현장에서의 인권보호 - 인권침해사례 및 성폭력·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과 구제절차
밀집 지역 외국인	공통 과목 (2시간)	기초법 · 질서	- 자유민주적 기본질서, 준법의식,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- 생활법률, 경범죄 유형, 쓰레기 분리수거, 성범죄·마약사범·무면허 운전 등 법규위반 사례 - 출입국·체류·국적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기초정보
		한국사회 적응정보	-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,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- 교통, 의료, 주거, 전기·통신, 은행 등 이용방법 - 정부기관, 지자체, 복지·교육·문화시설 등 소개

이민자 유형	과목		내 용
중도입국 청소년	공통 과목 (2시간)	기초법 · 질서	- 자유민주적 기본질서, 준법의식,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- 생활법률, 경범죄 유형, 쓰레기 분리수거, 성범죄·마약사범·무면허 운전 등 법규위반 사례 - 출입국·체류·국적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기초정보
		한국사회 적응정보	-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,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- 교통, 의료, 주거, 전기·통신, 은행 등 이용방법 - 정부기관, 지자체, 복지·교육·문화시설 등 소개
	특수 과목 (1시간)	미래진로	- 교육환경 등 출신국과 한국 문화의 차이 - 청소년 문화·복지 시설 안내 - 학교교육 제도 소개, 상급학교 진학, 직업교육 제도 및 취업 안내
결혼 이민자	공통 과목 (2시간)	기초법 · 질서	- 자유민주적 기본질서, 준법의식,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- 생활법률, 경범죄 유형, 쓰레기 분리수거, 성범죄·마약사범·무면허 운전 등 법규위반 사례 - 출입국·체류·국적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기초정보
		한국사회 적응정보	-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,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- 교통, 의료, 주거, 전기·통신, 은행 등 이용방법 - 정부기관, 지자체, 복지·교육·문화시설 등 소개 - 결혼 이민자 입국 초기에 겪는 어려움 해소 - 선배 결혼이민자와의 정서적 공감 형성
	특수 과목 (1시간)	가족 간 상호이해	- 부부, 가족 간 상호배려와 이해 - 한국 가정문화와 생활방식 - 성폭력·가정폭력 등 예방 및 신고절차
방문취업 자격 외국 국적 동포	공통 과목 (2시간)	기초법 · 질서	- 자유민주적 기본질서, 준법의식,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- 생활법률, 경범죄 유형, 쓰레기 분리수거, 성범죄·마약사범·무면허 운전 등 법규위반 사례와 주요 형법의 범죄유형 등
		한국사회 적응정보	-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,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- 교통, 의료, 주거, 전기·통신, 은행 등 이용방법 - 정부기관, 지자체, 복지·교육·문화시설 등 소개 - 국가 간 법률, 문화적 차이, 한국문화 이해 등
	특수 과목 (1시간)	국내정착	-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절차와 요건 - 영주·국적 취득요건 - 가족초청 등 시증발급 절차 안내

붙임 2 조기적응지원센터 모집 규모(안)

※ 실제 모집규모는 지원센터 지정 신청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결혼이민자, 중도입국자녀, 방문취업자격을 외국국적동포 (14개)

관할 출입국 외국인청(사무소)	체류유형	방문취업(H-2)자격 외국국적동포		결혼 이민자	중도입국 청소년
		중국동포	CIS동포		
서울		1	1		
부산					
인천					
수원					
제주					
서울남부				2	1
안산					
대구					
대전					
여수		1	1	1	1
양주					
울산					
광주			1		
창원		1	1		1
전주					
춘천			1		
청주					
합계		3	5	3	3

붙임 3

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------	-----	------

명 칭 ¹⁾	대표자	운영경력 (대표자)	개월 ()
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소재지	전화번호
-----	------

시설확보	[] 소유 [] 임차 / [] 독립 [] 복합	개관일자	()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

운영유형 (2개 이상 복수 선택 가능)	[] 결혼이민자 [] 중도입국청소년 []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(중국동포, 한국어 강의) []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(CIS국가동포, 러시아어 강의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시설내역	전체 연면적	강의실	휴게실 등
	m ²	m ² 개	m ² 개
		m ² 개	m ² 개
		m ² 개	m ² 개

인력현황 행정 인력 등	성명	자격	성명	자격
	※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첨부			

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3조의2에 따라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¹⁾

(서명 또는 인)

법무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
------	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1) 명칭 및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의 기관명으로 기재하고, 서명란에 직인 날인

※ 소속기관을 별도 표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명 옆에 괄호()에 병기

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계획서

본 기관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원센터로 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성실히 운영할 것을 약속합니다.

○ 신청 내역

구 분	신청 내역		비고
	지원센터 운영유형	신청여부	
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	결혼이민자		
	중도입국 청소년		
	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 (중국 동포)		
	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 (CIS국가 동포)		

- 첨부서류 : 1. 기관 설명 자료(관계 증빙서류 첨부)
 2. 운영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
 3. 운영조직 및 인력 현황
 4. 2020~2022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력
 5. 운영시설 및 장비 관련 사진
 6. 교통편 및 약도. 끝.

신청인

년 월 일

(서명 또는 인)

법무부장관 귀하

1. 기관 설명 자료

가. 기관 개요

- 기관명 :
- 설립일 :
- 대표자 :
- 소재지 :
- 연락처 :
-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 :

나. 기관 연혁 및 운영기관 신청 사유 *↳ 기관 소개 및 신청사유는 간결하게 작성*

- 기관 설명(연혁 등)
- 운영기관 신청 사유
- 이민자 지원 및 교육 등 관련 사업 추진 경험(해당 기관만 기재)
- 사업명 : 000000
 - 내용 :
 - ※ 주관기관, 사업명, 사업내용, 추진일시, 참여자 수 등 기재

다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이나 예산 지원사업 실적(해당 기관만 기재)

↳ 사업 실적이 여러 개인 경우 최근 3년 이내 주요 사업만 작성

- 사업명 : 000000
 - 지원기관 및 지원 규모 :
 - 근거 법령 :
 - 사업내용 및 실적 :
 - ※ 주관기관, 사업명, 사업내용, 추진일시, 참여자 수 등 기재

2. 운영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(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시 사용 가능)

가. 강의실 현황 ⇨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에 사용 가능한 시설 현황만 기재

건물명	층	호실	면적(m ²)	책상·의자수 (1세트)	최대수용가능인원
예시) 산학관	2	202	50	30	50명
예시) 총계		5개실	300	150	400명

나. 사무실 및 부대시설 현황 ⇨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에 사용 가능한 시설 현황만 기재

건물명	층	호실	면적(m ²)	수용가능인원	사용용도
예시) 학림관	3	302	50	30	사무실
예시) 인문관	4	402	50	30	수유실 및 어린이 놀이공간
예시) 00 프라자	5	502	50	30	휴게실
예시) 종합		5개실	150	90	-

○ 부대시설 관련 설명

-

-

다. 운영시설 총 면적 및 임대/소유 등 기재

○ 총 면적 : m² (※ 가 + 나 + 화장실, 복도 등 모두 포함)

○ 임대/소유 등 기재 : (※ 임대료 등 명시)

○ 소화기수 :

○ 비상대피로 유무 :

○ 비상대피안내도 부착(설치) 유무 :

○ 보험 관련 설명 :

라. 교육장비 현황(사무실, 강의실, 부대시설 등에 비치된 장비 현황)

☞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에 사용 가능한 교육장비 현황만 기재

장비위치			장비구분	단위	보유수량	비고 (구입연도 등)
건물명	층	호실				
예시) 산학관	2	202	책상, 의자	조	30	2010 등
			컴퓨터	대	5	2010 등
			프린터기	대	1	2010
			복사기	대	1	2010
			전화	대	1	2010
			팩스	대	1	2010
			화재방지시설	set	1	2010
		
예시) 인문관	4	402	침대	대	1	2010
			냉장고	대	1	2012
			수유기	대	1	2011
			유모차	대	1	2013
			난방기	대	1	2014
			응접set	대	1	2015
			놀이시설	set	1	2014
			화재방시시설	set	1	2000
		
...						
...						
예시) 종합		0개실	책상, 의자	조	30	-
			컴퓨터	대	5	
			프린터기	대	1	
			
			난방기	대	1	
			응접set	대	1	
			놀이시설	set	1	
			화재방시시설	set	1	
			

3. 운영 조직 및 인력 현황

가. 기관 조직 구성

(단위 : 명)

기관 부서	담당업무	구성인원	비 고
운영지원과	기획, 인사	4명	
교육운영과	교육, 협력		
회계팀	예산, 회계		
총 계			

나. 운영인력 현황

연번	성 명	성별	출생 연도	직위	이메일	연락처	비 고
1	나대표	남	1950	00대 총장	ans@naver.com	000-000-0000	다문화사회전문가
2	김전담	여	1966	교육주임	ans@naver.com	000-0000-0000	한국어강사자격증
3	홍길동	남	1975	상담주임			인권강사

※ 첫 줄에는 운영기관장을 기재할 것

4. 2020년 ~ 2022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력

가. 교육과정

연도	교육명	개설수	총 참여자(명)	비고
2020	조기적응프로그램(외국인유학생)	1	30	
	사회통합프로그램(1~3단계 과정)	2	40	
	외국인유학생 오리엔테이션	2	120	
2021	조기적응프로그램(결혼이민자)	5	40	
	지역주민 생활안전교육	1	20	
2022	조기적응프로그램(외국국적동포)	2	120	
	사회통합프로그램(5단계 과정)	1	20	

5. 운영시설 및 장비관련 사진(10장 내외)

⊗	⊗
건물 사진 1	건물사진 2

⊠	⊠
사무실 1	사무실 2
⊠ (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)	⊠ (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)
편의실 1	편의실 2
⊠ (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)	⊠ (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)
강의실1(규모가 가장 큰 강의실)	강의실2(규모가 가장 작은 강의실)

6. 교통편 및 약도

가. 주소

-

나. 시설 접근 교통편

- 지하철 1호선 〇〇역 하차 1번 출구에서 도보 1KM 최고빌딩 7층
777번 버스 00역 하차 도보 1KM 경찰서 앞

다. 약도(이미지 파일로 등재)



붙임 5

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 평가항목 및 심사내용

평가 영역	평가 항목	심사 내용	배점	심사결과				
			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A. 추진 역량	1. 기본인프라(20)	· 사업수행 운영인력, 시설, 장비(공간, 음향, 전산장비 등) 기본 인프라 확보	20	20	16	12	8	4
	2. 교육경험(30)	· 최근 3년간('19~'21년)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	30	30	24	18	12	6
B. 추진 체계	1. 공익성(10)	· 최근 3년간('19~'21년) 공익성 업무 수행실적	10	10	8	6	4	2
	2. 접근성(10)	· 교육참가자가 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접근 용이성	10	10	8	6	4	2
C. 유기적 연계성	1. 업무연계성(20)	·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)와 원활한 업무 연계 가능성 · 국내체류동포대상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정책 추진 시 협력 가능성	20	20	16	12	8	4
	2. 기여가능성(10)	· 최근 3년간('19~'21년) 이민자 적응 및 정착지원, 이민자 통합을 위한 노력, 향후 기여 가능성 등	10	10	8	6	4	2
총 계(100)			100	100	80	60	40	20

※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

□ 작성 방법

○ 수신지정 :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)장

(※ 예시 : 법무부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장)

○ 문서제목 :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제출

- 체류유형(결혼이민자, 중도입국청소년,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
(중국동포, CIS국가동포)) 중 신청하는 체류유형에 표기(□란을 ■로 표기)

※ 2개 이상 복수 선택 가능

- 붙임서류는 항목별로 연번을 구분하여 기재

※ '00서류 일체'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말고, 개별 항목별로 붙임 서류명을 각각의 연번으로 기재

□ 참고 사항

○ 신청 시 공문 및 붙임서류 제출

- 모든 서류는 A4 용지크기로 한글 또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

※ 단, 운영계획서를 PDF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인 날인이 필요한 첫장을 제외하고는 편집이 가능한 한글 파일을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, 방문 신청하는 경우라도 운영계획서 한글 파일은 전자메일로 별도 제출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
□ 공문작성 예시

수신 : 법무부 00출입국·외국인청장

제목 :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제출

1. 법무부 공고 제2022- 000호에 따라, 2023~2024년도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(지원센터)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.

2. 신청 유형(2개 이상 복수 선택 가능)

결혼이민자

중도입국청소년

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(중국동포)

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(CIS국가동포)

붙임 1.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(지원센터) 지정신청서

2.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신청 계획서

3.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인 경우에만 제출)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
4.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공익법인 설립허가증,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

5.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서류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49조제1항 각 호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

6. 기타 관계 증빙 서류명. 끝.

붙임 7

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) 이민통합지원센터 주소 및 연락처

출입국관서	접수처 (이민통합지원센터)		주 소
	전용 전화번호	전자메일	
서울출입국 외국인청	02-2650-6217	kiipseoul@korea.kr	(08013)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, 3층
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	02-6980-4802	kiipseoulsouth@korea.kr	(07799)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, 3층
부산출입국 외국인청	051-461-3084	kiipbusan@korea.kr	(48940)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2-1
인천출입국 외국인청	032-890-6411	kiipincheon@korea.kr	(22306)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93, 3층
수원출입국 외국인청	031-695-3821	suwonimmigration@korea.kr	(16705)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
제주출입국 외국인청	064-741-5447	jeuimmigration@korea.kr	(63150)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3
안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	031-364-5767	kiipansan@korea.kr	(15458)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88
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	053-980-3558	kiipdaegu@korea.kr	(41069)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
대전출입국 외국인사무소	042-220-2190	kiipdaejeon@korea.kr	(34812)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7
여수출입국 외국인사무소	061-689-5516	yeosuimmigration@korea.kr	(59638) 전남 여수시 무선로 265
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	031-828-9487	kiipyangju@korea.kr	(11443)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75번길 23, 3층
울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	052-279-8029	ulsankiip@korea.kr	(44691) 울산광역시 남구 돈질로 86(달동), 2층
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	062-605-5210	kiipgwangju@korea.kr	(61969)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
창원출입국 외국인사무소	055-981-6021	kiipchangwon@korea.kr	(51716)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0 창원출입국·외국인사무소
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	033-269-3215	kiipchuncheon@korea.kr	(24408)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
청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	043-235-4905	kiipcheongju@korea.kr	(28365)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52
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	063-249-8603	kiipjeonju@korea.kr	(54903)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